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21진정0153400 경찰공무원 신체기준에서 교정청력자 차별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경찰청장

주 문

1. 경찰청장에게, 교정청력자에 대한 채용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의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표’에서 정상청력만을 인정하는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2. 이 사건 진정은 기각합니다.

이 유

I. 진정사건 조사결과

1. 진정요지

피해자는 경찰공무원이 되기를 희망하나, 현행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

행규칙」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에 교정 청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좌우 정상 청력만 인정하고 있어 지원이 불가능한 바, 이는 교정 청력자에 대한 차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한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한

경찰의 직무는 주변에 대하여 세밀하고 정확한 진술 청취 및 신속한 판단을 요하므로 시력을 비롯한 청력은 경찰 업무수행에 중요하게 요구되는 경찰의 신체요소이다.

교정 청력은 교정을 하더라도 일반청력에 비해 분별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경찰병원 이비인후과 전문가 소견이며, 경찰업무 대부분이 소음에 노출된 현장에서 업무가 이루어지고 육성이나 무전기 사용 등 상황을 청취하고 전파함에 있어 소리의 분별력은 직무수행에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모든 초임 경찰관은 「경찰공무원 임용령」과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에 따라 예외 없이 현장 보직에서 경찰생활을 시작하여야 하며, 청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현행 경찰채용 청력 제한은 경찰업무 대부분이 소음에 노출된 현장에서 이루어져, 소리와 분별력은 대민 업무 수행에 중요한 경찰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결정한 것으로 40dB이 과도한 제한은 아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관련 법령 및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4조의2 관련 [별표5]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표'(이하 '신체검사 기준표'라 한다)에 의하면 경찰공무원 채용 시 청력 기준은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dB) 데시벨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신체검사 기준표에 의하면 교정청력 유무가 언급되어있지 않으나 경찰청은 대민업무 특성상 소음에 노출된 현장에서 소리의 분별력이 직무에서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기에 교정 전 청력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 경찰청이 2019년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주요 국가에서는 일정 정도 주파수대에서 20~45(dB) 데시벨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청력보조기 사용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영국 런던 메트로폴리탄과 미국 로스앤젤레스 경찰의 경우는 청력보조기 사용을 인정하고 추가 검진을 통해 적격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표> 주요국의 경찰 청력 평가 기준

주요 국가	평가 기준
미국 버지니아(Virginia) 주	500~3000hertz에서 25~30dB이하에서 청력이

알렉산드리아(Alexandria) 시	완전해야 함
미국 뉴욕(New York) 주	500~6000hertz 25dB~30dB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함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 (Los Angeles)	소음상황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속삭이듯 말하는 것을 이해해야 함 청력보조기 사용무방(추가검사)
호주	500~4000hertz에서 35~40dB이하를 들을 수 있어야 함
캐나다 토론토(Toronto)	500~4000hertz에서 35~45dB이하를 들을 수 있어야 함
뉴질랜드	500~8000hertz에서 20~40dB을 들을 수 있어야 함
영국 런던 메트로폴리탄 (London Metropolitan)	한쪽 청력 상실이나 청력보조기 사용은 무방하며, 적절한 청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추가 검진을 통해 적격 여부 결정

라. 소방공무원의 경우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내 신체기준에는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3]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판정기준'에 의하면 "청력의 경우 두 귀의 교정 청력이 각각 40dB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5. 판단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고용(채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 진정은 현행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신체 조건에 교정청력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교정 청력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주장이나, 국내 경찰공무원 청력 기준이 다른 나라의 기준보다 높다고 보기 어렵고, 경찰업무수행과 청력에 대한 보다 상세한 검토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기에 현재로서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II. 의견표명

1. 검토 배경

이 사건 진정은 기각하였으나, 정상 청력만을 인정하는 현행 기준으로 인하여 교정 청력자에 대한 채용 배제가 발생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 표명을 검토하였다.

2. 판단 및 참고기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를 판단기준으로 하고,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유엔장애인 권리협약'이라 한다) 제5조를 참고하였다.

3.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표' 개정 필요성

현행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4조의2 관련 [별표5]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표'(이하 '신체검사 기준표'라 한다)에 의하면 경찰공무원 채용 시 청력 기준은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체검사 기준표에는 교정 청력 인정 여부가 언급되어있지 않으나 피진정인은 경찰 직무 여건상 세밀하고 정확한 진술 청취, 소음에 노출된 현장에서 육성이나 무전기 사용 등 상황을 청취하고 전파하여야 하기에 소리를 정확하게 듣고 분별하는 것 자체가 직무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요소이기에 교정 전 청력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 인정사실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2019년 피진정인이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주요 국가에서는 일정 정도 주파수대에서 20~45dB(데시벨)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국내 경찰공무원 청력 기준이 높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청력이 떨어지는 난청자 모두가 일률적으로 어음분별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없다. 난청 중 소리의 전달에 문제가 있는 전음성 난청(傳音性難聽)의 경우는 보청기 착용 시 어음분별력이 거의 정상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더욱이 안경이나 렌즈 착용 등이 보편화되어 가면서 교정시력이 인정

되고 있으며, 보청기 역시 기술발전으로 다양한 유형이 개발되어 귓속형 보청기의 경우 수중 착용만 문제일 뿐이지 달리기, 격투기 등 격한 운동에서도 귀에서 이탈하지 아니하며, 배터리 수명이 일정 기간 지속될 수 있기에 취침 중에도 착용이 가능하다.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보조기기를 편리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고(제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촉진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다(제4조).

이 사건 인정사실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다수의 국가에서 교정 청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나 미국 로스앤젤레스, 영국 런던 시의 경우 경찰공무원 채용에서 교정 청력을 인정하고 추가검사를 통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더욱이 국내 소방공무원 채용기준에서는 교정 청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경찰 업무와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소방공무원도 화재 진압과 같은 소음이 심한 업무환경에서 무전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환경이 완전히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경찰공무원 신체기준에 있어서 교정 청력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기회를 전면 차단하기보다 청력과 어음분별력에 대한 기준을 보다 세밀하게 마련해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를 증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제25조 제1항 및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1. 19.

위원장 남 규 선

위원 서 미 화

위원 한 석 훈

<별지>

관련 규정

1.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3.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장애인·노인 등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보조기기를 편리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이 자아를 실현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5조 평등 및 비차별

1. 당사국은 모든 인간은 법 앞에서 그리고 법 아래 평등하며, 법이 인정하는 동등한 보호 및 동등한 혜택을 차별 없이 받을 자격이 있음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모든 이유에 근거한 차별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평등하고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보장한다.
3. 당사국은 평등을 증진하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절차를 취한다.
4. 장애인의 사실상 평등을 촉진하고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는 이 협약의 조건 하에서 차별로 간주되지 아니한다.